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관련** **연계 사항에 관한 공고**재정부, 세무총국, 민정부 공고 2021년 제3호사회 공익성기부를 장려하고, <재정부, 세무총국, 민정부의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>(재정부, 세무총국, 민정부 공고 2020년 제27호) 및 관련 문건의 연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, COVID-19 영향을 고려해 유관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1. 2020년도-2022년도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시, 일부 조건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 1.1 민정부처는 법에 의거 등기한 자선조직과 기타 사회조직(이하 ‘사회조직’이라 통칭)의 2018년과 2019년 공익자선사업 지출과 관리비용 비율은 <민정부, 재정부, 국가세무총국의 ‘자선조직이 전개하는 자선활동 연간 지출과 관리비용의 규정’에 관한 통지>(민발 [2016] 189호)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 1.2 사회조직은 2018년부터 본 공고 발표일 최근 1기(期)의 평가등급이 3A(3A 포함) 이상 도달하여야 한다. 2019년 설립된 사회조직 및 2019년부터 본 공고 발표일까지 평가를 받았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사회조직은 자격 확인 시 당분간 평가등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.1.3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시, 사회조직의 비영리조직 면세 자격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.1.4 본 조에 따라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경우,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 3A(3A 포함) 평가 등급 취득과 더불어 비영리조직 면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. 2. 2021년도-2023년도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시, 사회조직은 2019년과 2020년 공익자선사업 지출과 관리비용 비율은 <민정부, 재정부, 국가세무총국의 ‘자선조직이 전개하는 자선활동 연간 지출과 관리비용의 규정’에 관한 통지>(민발 [2016] 189호)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 3.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.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.재정부세무총국민정부2021년 2월 4일 |  | **关于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确认有关****衔接事项的公告**财政部、税务总局、民政部公告2021年第3号　　为鼓励社会公益性捐赠，做好《财政部 税务总局 民政部关于公益性捐赠税前扣除有关事项的公告》（财政部 税务总局 民政部公告2020年第27号）与相关文件的衔接工作，并考虑新冠肺炎疫情影响，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：　　一、确认2020年度——2022年度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时，部分条件可按照以下规定执行：　　（一）在民政部门依法登记的慈善组织和其他社会组织（以下统称社会组织）2018年和2019年的公益慈善事业支出和管理费用比例，可按照《民政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<关于慈善组织开展慈善活动年度支出和管理费用的规定>的通知》（民发〔2016〕189号）有关规定执行。　　（二）社会组织2018年至本公告发布之日最近一期的评估等级达到3A以上（含3A）。对于2019年成立的社会组织，以及2019年至本公告发布之日已接受评估但尚未出具结论的社会组织，确认资格时可暂不考虑其评估等级。　　（三）确认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时，可暂不考虑社会组织的非营利组织免税资格。（四）按照本条取得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，在资格有效期内，应取得3A以上（含3A）评估等级，且取得非营利组织免税资格。　　二、确认2021年度——2023年度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时，社会组织2019年和2020年的公益慈善事业支出和管理费用比例，可按照《民政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<关于慈善组织开展慈善活动年度支出和管理费用的规定>的通知》（民发〔2016〕189号）有关规定执行。　　三、本公告自2020年1月1日起执行。　　特此公告。财政部 税务总局 民政部　　2021年2月4日 |